

중국 하남사범대학교와 대한민국 국립 서울교육대학의 학술교류협정서

1. 목적

중국 하남 사범대학교와 대한민국 국립 서울교육대학교는 상호 존중과 호혜 평등 및 우호협력의 원칙에 입각하여 양 교의 교육학술 연구와 교류의 협력관계를 수립하고, 아울러 국제적인 전문 인력의 양성과 학술 및 문화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본 협정서를 체결한다.

2. 교육·학술교류계획의 항목:

양 교는 다음과 같은 학술·교육 교류 계획을 진행한다.

- (1) 부속학교의 교직원의 교류
- (2) 학부와 대학원학생간의 교류
- (3) 학술 연구성과의 상호 제공
- (4) 학술에 관계되는 정기간행물 또는 일반간행물의 상호교류와 교환
- (5) 교육 연구계획에 대한 협력
- (6) 기타 각종 문화와 교육활동에 관한 교류

3. 추진 방식

- (1) 양 교는 학술 교류 계획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본 교류계획을 추진한다.
- (2) 교류계획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상대측에 교육·학술 교류계획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.
- (3) 본 교류 협정서가 추진하고자 하는 교류 계획은 반드시 별도의 실행세칙에서 지정 또는 사전에 협의에 의하여 지정한 개별 계획을 말한다.

4. 교류 비용의 부담

- (1) 양 교의 교직원 및 학생교류에 필요한 경비는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원칙을 하되, 다만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여 보조할 수가 있다.
- (2) 학술 연구 성과의 교류는 호혜 원칙 하에, 학술과 관계되는 정기간행물과 일반 간행물의 교환 및 유통에 관한 제반 경비는 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.
- (3) 양교의 공동 연구과제 및 각종 문화, 교육활동의 교류에 필요한 경비는 개별 합의서에서 정한다.

5. 협정서의 유효기간

본 협정서는 양 교의 대표자간의 서명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며, 유효기간은 5 년이다. 협정서의 연장은 양교의 동의를 얻어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을 할 수 있다.

6. 협정서의 수정

본 협정서에서 정한 내용은 양측의 동의 하에 수정할 수가 있다. 수정 시에는 6 개월 전에 그 내용을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.

7. 협정서의 보관

본 협정서는 중국어와 한국어로 각 2 부씩을 작성하여 양측이 중국어와 한국어본 각 1 부씩 보관한다.



2016년 5월 27일

국립 서울교육대학교

총장 김 경 성

2016년 5월 27일

중국 하남사범대학교

총장 CHANG Junbiao

